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
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금융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

3. 주요내용

가. 수사·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(안 제22조)

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·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

나.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(안 별표1)

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1호 중 “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사기관”을 “수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”을 “수사기관에 대한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마목 단서 중 “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한다”를 “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 별로 산정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 부과 절차 및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 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·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·나. (생략) ③·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	
연 락 처	(02) 2100 - 1666